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1년 9월 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윤상흠 무역정책과장(02-2110-4829), 이윤진 사무관(5313)		

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

- 상담지원 요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도 병행 추진 -

□ **지식경제부**(장관: 최중경)는 한-EU FTA 발효(7.1), 한-미 FTA 비준 논의 등 **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대비**하여, **9.6일 「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을 개정·시행**함

○ 주요 내용은 **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**을 현행 6개월간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'25% 이상 감소'에서 **'20% 이상 감소'로 완화하는 것임**

- 이를 통해, **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대상이 확대**되어 **제도의 실효성이 제고**될 것으로 기대됨

◈ **무역조정지원제도**란, **FTA체결로 인하여 피해**를 입은 **제조·서비스 기업**의 경쟁력 회복, 생산성향상, 구조조정을 위해 **융자,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***로 **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원이 가능**

* **(융자지원)**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, 시설자금 30억원 한도, 변동금리(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-0.6%차감)
(상담지원) 무역조정전략(사업전환, 구조개편 등), 경영·기술개선 및 경영혁신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(정부지원비율 80%내 기업당 2,400만원 한도)

□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피해초기 적은 비용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**상담지원의 요건을 대폭 완화**해 '무역조정기업'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**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추진** 중

* 관련 법률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(7.6~7.25) 완료 후 법제처 심사 중

○ **또한, 무역조정지원센터**(중소기업진흥공단)를 통한 **업계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강화**를 통해 **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절차개선 등도 적극 검토**해 나갈 계획

참 고 **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**

□ **지원목적**

○ **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**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**기업의 경영개선 지원**

□ **지원대상** (개정내용 기준)

○ **(업종)**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**제조업 및 서비스업**

* 대상확대 :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('07.4.11) → 제조업 이나 서비스업('08.6.22)

○ **(기준)**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**20% 이상 감소**

□ **지원내용**

○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,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**융자지원, 경영혁신 상담지원 등**

① **(융자지원) 「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」**에서 융자지원

* 시설자금 100%이내, **업체당 최대 30억원**, 8년내 상환(3년거치포함),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.6%p 차감 금리('11.2분기기준 4.29%-0.6%=3.69%)

** 운전자금 100% 이내, **업체당 최대 5억원**, 5년내 상환(2년거치포함)

② **(컨설팅지원) 사업전환, 경영·기술 개선 등 상담**

* 업체당 **최대 24백만원**, 상담비용의 **80%한도**

□ **지원실적**

○ '11.8월 현재 6업체 **18억원 지원** (융자 17.5억원, 컨설팅 4천8백만원)